

2018. 6. 20. 선고
도쿠시마 지방재판소 제2민사부
2014년(와) 제309호

#사진촬영
#부정경쟁방지법
#사죄광고
#금지청구
#종교적인격권

2018년 6월 20일 판결

구두변론 종결일 2018년 2월 28일

**도쿠시마(徳島) 지방재판소 제2민사부 2014년(와) 제309호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판결

원고 : 시코쿠(四国) 88개소 영장회(靈場会) 소송승계인 일반사단법인 시코쿠 88개소
영장회(이하 '원고 영장회')

동대표자 : 대표이사 P1

원고 : 극락사

동대표자 : 대표임원 P2

원고 : 대흥사

동대표자 : 대표임원 P3

상기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島尾大次, 益田歩美, 妹尾祥

피고 P4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松本龍太

주문

1. 피고는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에 대해, 각각 110만엔 및 이에 대한 2014년 11월 23일부터 지불 완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불하라.
2. 피고는 별지 사진목록 기재 2 및 동 목록 기재 67의 각 사진을 전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피고는 별지 사진목록 기재 2 및 동 목록 기재 67의 각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御影)¹⁾, 서적, 상품을 제작, 판매, 배포해서는 안 된다.
4. 피고는 별지 사진목록 기재 2 및 동 목록 기재 67의 각 사진, 그 네거티브 필름 및 전자 데이터를 폐기하라.
5. 피고는 별지 사진목록 기재 2 및 동 목록 기재 67의 각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御影), 서적, 상품을 폐기하라.
6.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의 그 외의 청구와 원고 영장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원고 영장회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이를 25분하고, 그 7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그 나머지를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판결은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각각 330만엔 및 이에 대한 2014년 11월 23일부터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2. 피고는 별지 사진목록 기재 사진을 전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피고는 별지 사진목록 기재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御影), 서적, 상품을 제작, 판매, 배포해서는 안 된다.

1) (역주) 번역의 편의상 불상사진을 어영(御影)으로 표기함.

4. 피고는 별지 사진목록에 기재된 사진, 그 네거티브 필름 및 전자 데이터를 폐기하라.
5. 피고는 별지 사진목록 기재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御影), 서적, 상품을 폐기하라.
6. 피고는 별지 불상사진(御影) 목록 기재의 불상사진(御影) 및 이를 수록한 책자, 금액, 족자, 벽걸이 등을 제작, 판매, 배포해서는 안 된다.
7. 피고는 별지 불상사진(御影) 목록 기재의 불상사진(御影) 및 이를 수록한 책자, 액자, 족자, 벽걸이 등을 폐기하라.
8.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해 별지 사과 광고 목록에 기재된 사죄 광고를 별지 사과 광고 게재 요령 기재의 게재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제2 사안의 개요

1. 본건은 시코쿠(四国)에 있는 88곳의 사원에 관한 단체인 원고 영장회 및 그 중 2개의 사원인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가 (1) 원고들이 허가하지 않은 寺宝(본존) 등을 사진 촬영하였고, 촬영이 허가된 寺宝(본존) 등의 사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허가한 조건에 반하여 전시 공개하여 동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 서적 및 상품을 제작·판매·반포한(이하 ‘반포 등’이라 칭함),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 간의 촬영허가 합의에 반하고, 또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2) 각 사원의 명칭이 부기된 위 불상사진을 사용하여 불상본체 또는 이를 수록한 책자, 액자, 족자, 병풍 등을 반포하는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또는 소정의 부정경쟁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들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상기 (1)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하고 상기 (2)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것으로 원고들 각자에게 위자료 300만 엔 및 변호사 비용 30만 엔의 손해 합계 330만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 후로부터 소장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4년 11월 23일부터 지불 완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기 (1)의 촬영허가합의 위반 또는 종교적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별지 사진목록에 기재된 사진(3[1], 19, 21, 24, 654, 655, 이하 ‘본건 사진’이라 한다)의 전시·공개(이하 ‘공개 등’이라 한다.), 본건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서적·상품의 반포 등의 각 금지 및 본건 사진, 그 네거티브 필름 및 전자 데이터, 본건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서적·상품의 각 폐기, 상기 (2)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법 제3조 또는 성명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근거해 별지 불상사진 목록 기재의 각 불상사진(이하 '본건 불상사진'이라 한다) 및 이것을 수록한 책자, 금액, 족자, 병풍 등의 반포 등의 금지 및 폐기와 함께 원고들의 명예, 신용회복조치로서 민법 제72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후술한 증거 등에 의해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실)

(1) 당사자 등

가. 시코쿠(四国) 88개소는 시코쿠에 있는 88개의 弘法大師 연고의 영지, 사원(사찰이라고도 한다. 이하 88곳의 사찰을 정리해 '각 사찰'이라 한다)의 총칭으로, 각 사찰에는 도쿠시마현(아와), 고치현(도사), 에히메현(이요) 및 가가와현(사누키)의 각 소재지 순서로 제1번부터 제88번까지 고유의 번호가 매겨져 있다(별지 사진목록 기재의 1에서 88까지의 번호는 각 번호로 대응한다). 각 사찰의 순례(또는 순례하는 자)는 시코쿠 순례·순례 등으로 불리고 있다.

나. 원고 영장회는 시코쿠 순례의 보급·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7년 6월 1일에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으로, 시코쿠 88개소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1968년경에 조직된 소송승계 전의 시코쿠 88개 영장회(권리능력 없는 사단)가 법인화한 것이다(이하 소송승계 전의 시코쿠 88개 영장회도 포함하여 "원고 영장회"라 한다. 변론의 전체 취지).

다. 원고 극락사는 도쿠시마 현 내에서 시코쿠 88개소 제2번 사원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으로 본존은 아미타불이다(갑5).

라. 원고 대흥사는 가가와 현에서 시코쿠 88개소 제67번 사원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으로 본존은 약사여래불이다(갑5 이하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를 합쳐 '원고들 사원'이라고도 한다).

마. 피고는 'P4'라는 성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이다.

(2) 각 초소의 어영

가. 각 사찰에서 참배자는 참배·납경의 증거로서 납경소에서 납경장·납경축에 도장을 받아 각 사찰의 본존이 그려진 흑단색 인쇄로 된 종이(이하 '본존어영'이라 한다)를 수령한다(갑5, 원고 영장회 대표자 본인).

나. 각 사찰 경내에 있는 모래를 한 곳에 모아 그 모래 위를 밟으면서 예배용으로 모셔진 모래밧기용 본존이라고 하는 각 사찰소의 본존 그림, 석불 등을 예배하는 ‘모래밧기의식’에 의해서도 각 사찰을 참배한 것과 같은 공덕이 있는바, 원고 영장회는 시코구 88개소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공방에 의뢰하여 각 사찰의 모래밧기용 본존 그림 88폭 및 대사어영(홍법대사의 초상화) 1폭을 제작했다.

그리고 원고 영지회 및 각 사찰은 상기 그림(이하 ‘모래밧기본존 등’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89장의 채색어영(대사어영을 제외하고 채색된 본존에 오른쪽 어깨에 세로쓰기로 본존명, 아래에 가로쓰기로 사찰의 번호와 사찰명이 부기된 것. 이하 “원고 어영”이라 한다. 갑2)을 작성하고, 2004년 12월 이후 대사어영에 대해서는 원고 영장회에서, 기타 어영에 대해서는 각 사찰에서 각각 1장 200엔에 배포하고 있다.(갑2, 갑83, 변론의 전체 취지)

(3) 일본방송협회(NHK) 등에 의한 프로그램 작성 및 서적출판

NHK는 2000년 12월 이후 원고 영장회에 시코구 88곳에 관한 프로그램 작성이나 서적 출판에 대한 협력을 의뢰하였다(갑35).

가. NHK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일본방송출판협회(이하 ‘NHK 출판’이라 한다.)에서 2002년 4월에 피고를 저자로 하여 원고영장회가 감수하는 ‘○○○○○○○○○○○○’이라는 단행본(갑5. 이하 ‘본건 단행본’이라 한다.)이, 같은 해 6월에 피고를 저자로 하여 원고영장회가 감수하는 ‘△△△△△△△△’이라는 제목의 호화본(갑6. 이하 ‘본건 호화본’이라 한다)이 각각 출판되었다(이하, 두 서적을 합쳐 ‘NHK 서적’이라 한다).

나. 본건 단행본에는 각 사찰에 대해 2페이지씩 사찰명, 본존명, 해설문 외 원칙적으로 본존의 사진(특히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피고가 2000년 가을부터 2002년 봄에 걸쳐 촬영한 것)이 게재되어 있는데, 첫머리에 ‘여러 사정에 의해 본존의 촬영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사찰에 대해서는 본존어영...을 게시했습니다.’라는 거절문이 붙어 있고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를 포함한 총 12곳의 사찰에 대해서는 본존어영이 기재되어 있었다(갑5).

다. 본건 호화본에는 각 사찰의 본존, 기타 제불 등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첫머리에 ‘또한 여러 사정에 의해 촬영·게재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

문에 본존 혹은 본존 이외의 제존을 소개할 수 없었던 사원이 있습니다.’ 라는 거절문이 붙어 있고 원고 극락사에서는 경내의 불족석, 원고 대흥사에서는 경내의 큰 녹나무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었다(갑6).

(4) 피고에 의한 사진 및 영정의 공개, 배포 등

가. 피고는 늦어도 2007년 이후 각 사찰의 사찰 보물 등의 사진인 본건 사진을 자신이 개최하는 사진전이나 미술관 등에서 공개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늦어도 2007년경 이후 본건 사진에 제1번 사찰(영산사)이라며 ‘시코쿠 제1번’ ‘영산사’ 등의 표시를 붙여(이하 피고가 붙인 표시를 ‘피고 표시’라 한다) 본건 어영을 작성하고(갑10) 이것을 종이카드로 하거나 책자, 액자, 족자 혹은 병풍에 수록한 형태로 배포 등을 하고 있다(갑21).

다. 피고는 2008년 5월경, 명보사를 발행소로 하여 ‘□□□□□□□□□□’이라는 제목의 서적(이하 ‘피고서적’이라고 한다. 갑14)을 출판했다. 피고서적에는 ‘2002년에 NHK 출판에서 호화책으로 출판한 것을 구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사진목록 기재 2의 원고 극락사의 본존사진(이하 ‘본건 사진 2’라 한다) 및 동 목록 기재 67의 원고 대흥사의 본존사진(이하 ‘본건 사진 67’이라 한다)이 각각 게재되어 있다.

3. 쟁점

(1) 본건 사진에 대해서

가. 본건 사진의 촬영·사용에 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가) 각 사찰의 사찰 보물 등의 촬영 및 사진의 배포 등에 관한 NHK와 원고 영장회 간의 합의 유무 및 그 내용

(나) 상기 (가)의 합의가 피고를 구속하는가

나. 본건 사진의 촬영·사용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가) 각 초소의 피고에 의한 본건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

(나) 각 초소의 피고에 대한 본건 사진의 포괄적인 이용 허락 유무

다. 피고에 의한 본건 사진의 촬영 및 배포 등이 원고들의 종교적 인격권을 침해하는가

(2) 본건 어영에 대하여

가. 본건 어영(御影)의 배포 등이나 본건 사진의 공개 등에 관한 피고의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책임 등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성

- a. '시코쿠 88개소' '시코쿠 제1번' '영산사' 등의 표시(이하 '각 사찰 표시'라 한다)가 원고의 상품 등 표시에 해당하는지(상품 등 표시 해당성의 유무)
- b. 각 사찰 표시는 '수요자 사이에 넓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주지성의 유무)
- c. 피고 표시는 각 표소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동일성·유사성의 유무)
- d. 피고에 의한 본건 어영의 배포 등이나 본건 사진의 공개 등은 본건 어영 및 본건 사진이 원고들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라 할 수 있는가(혼동 야기성의 유무)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제2호 해당성

- a. 각 사찰 표시가 원고들의 상품 등 표시에 해당하는지(상품 등 표시 해당성의 유무)
- b. 각 사찰 표시는 저명하다고 할 수 있는가(저명성의 유무)
- c. 피고 표시는 각 사찰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동일성·유사성의 유무)
- d. 피고는 피고 표시를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서의 사용 유무)

(다) 본건 어영 배포 등에 대한 금지 등 청구 여부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제1항제1호 해당성

각 사찰 표시 중 '시코쿠 제1번'부터 '시코쿠 제88번'까지의 표시가 부정

경쟁방지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보통 명칭 등’에 해당하는가?

나. 본건 어영 반포 등에 의한 원고들의 성명권 침해 유무

본건 어영의 반포 등이 원고들의 성명권을 침해하는가

(3) 원고들의 손해

(4) 배포 등의 금지, 폐기 청구, 사죄 광고의 여부

4.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1) 본건 사진에 대해서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가) 쟁점 (1) 가 (가)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원고 영장회와 NHK는 2000년 12월 5일경 NHK의 취재에 관해 (1) NHK가 자신들의 기획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코쿠 88곳의 취재를 실시하고, 그 성과물인 사진 및 영상은 같은 기획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2) 원고 영장회는 같은 기획에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취재에 응하여 회원인 각 사찰에도 협력을 호소하되, 촬영 대상, 조건, 한계, 공개 여부 등 협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각 사찰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이하 ‘본건 합의’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부인한다.

원고 영장회는 피고에게 시코쿠 88곳의 비불(秘仏) 촬영 및 사진 배포 등에 관해 포괄적인 허가를 내렸다.

(나) 쟁점 (1) 가 (나)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NHK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본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부인한다.

피고의 촬영은 NHK와는 관계가 없으며, 만일 본건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쟁점 (1) 나)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및 각 초소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사찰 보도 등을 촬영했다.

(나) 원고 영장회가 피고에 대해 본건 사진의 포괄적 이용을 허락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가 무단으로 본건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본건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다) 전기 (가) 및 (가)의 피고의 행위는 평온한 환경 속에서의 종교활동이나 그 뜻에 반하여 비불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종교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은 부인한다.

피고에 의한 사진 촬영은 모두 각 사찰의 허가를 얻어 한 것이다. 엄중하게 보존되어 있는 비불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촬영 시에 원고 및 각 사찰의 허락이 있었음은 명백하다. 원고들 제출의 증거(갑38, 39)에 의해서도 피고가 몇 개의 사찰에 대해 본건의 촬영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하고, 그 허가 하에 촬영을 행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다)는 다툰다.

(2) 본건 어영에 대하여

가. 피고에 의한 본건 어영의 반포 등이나 본건 사진의 공개 등에 관한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책임 등

(가) 쟁점 (2) 가 (가)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a. 상품 등 표시 해당성

원고 영장회는 각 사찰 표시의 사용권자인 각 사찰의 그룹이므로, 각 사찰 표시는 이것이 첨부된 상품 등이 원고 영장회나 각 사찰을 출처로 하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상품 등 표시에 해당한다.

b. 주지성

원고 영장회는 원고 어영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배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각 사찰 표시는 출처 식별 기능을 획득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시코쿠 88곳에 관심이 있는자들 사이에서는 각 사찰표시는 원고 영장회 및 각 사찰의 상품 등 표시로 주지하고 있다.

c. 동일성·유사성

피고 표시와 각 사찰 표시는 그 외관, 호칭 등이 완전히 동일하며, 일반인은 이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d. 혼동 야기성

어영은 각 사찰에서 배포될 예정에 있는바, 본건 어영에는 원고 영장회나 각 초소와 무관함을 나타내는 표시도 없고 형상 등도 유사해 마치 본건 어영이 원고 영장회나 각 초소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각 사찰 표시와 혼동을 발생시키고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다룬다.

a. 상품 등 표시 해당성에 대하여

각 사찰 표시는 촬영한 사진의 대상물을 표시하기 위한 제목 등에 불과하며, 어영의 출처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품 등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각 사찰 표시가 원고들의 상품 등 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찰 이름인 이상 각 사찰이 표시 주체이며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의 사찰 표시를 제외하고 원고들은 표시 주체가 될 수 없다. 또 원고 영장회는 교의의 포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뿐, 각 사찰 표시가 갖는 품질보증 기능 등을 보호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b. 동일성·유사성에 대하여

피고의 상품 등 표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영'이며, 그 설명문에 불과한 사찰명을 상품 표시로 평가할 수 없다.

c. 혼동 야기성에 대해서

본건 어영은 사진가에 의해 촬영된 것이 분명하고 원고 어영과는 외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들 사진을 각 사찰이 발행한 것으로 잘못 믿게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나) 쟁점 (2) 가 (나)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a. 상품 등 표시 해당성

상기 (가) a와 같이 각 사찰표시는 원고의 상품 등 표시에 해당한다.

b. 저명성

원고 영장회는 시코쿠 88개소의 사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TV의 전국방송에서 방송되거나 온라인 뉴스에 게재되는 등 하여 일본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서도 그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찰 표시는 저명하다고 할 수 있다.

c. 동일성·유사성

상기 (가) c와 같이 피고 표시와 각 사찰표시는 유사하다.

d.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 사용

각 사찰표시를 본건 어영에 붙이는 행위가 '사용'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 내지 다룬다.

a. 저명성에 대해서

각 사찰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본건 어영의 각 사찰 표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저명성 요건을 결여한다.

b.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서의 사용에 대하여

피고의 상품 등 표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영'이며, 그 설명문에 불과한 사찰명을 상품 등 표시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각 사찰 표시를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쟁점 (2) 가 (다)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원고 영장회는 각 사찰의 사용자 그룹이므로, 각 사찰 표시에 대해 표시 주체라 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가령 원고 영장회가 각 사찰표시의 표시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 기초한 금지 등 청구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널리 인정되어 권리자가 상품 등 표시의 주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 영장회는 각 사찰의 본존이나 원고 영정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라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와 유사하게 혼동을 일으키는 본건 영정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원고 영장회의 영업상 이익은 실제로 침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을 다룬다. 원고들은 각 사찰 표시에 대해 표시주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도 해당하지 않으며, 각 사찰 표시에 관해서는 금지 등 청구의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라) 쟁점 (2) 가 (라)에 대해서

(피고의 주장)

「시코쿠 제1번」으로부터 「시코쿠 제88번」까지의 표시는, 시코쿠라고 하는 지명에 번호를 조합한 것이므로, 「보통 명칭 등」에 해당해, 부정 경쟁 방지법의 적용은 제외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을 다룬다.

보통 명칭인지 여부의 판단은 거래에서의 여러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각 사찰의 표시가 1958년경부터 사용되고 있다는 점 및 본건 어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배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시코쿠 제1번'부터 '시코쿠 제88번'까지의 표시는 '보통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특허청은 '시코쿠 제1번' 등으로 기재한 상표에 대해 이들을 지정 상품으로서 등록하고 있다.

나. 쟁점 (2) 나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본건 화보의 발행주체는 그 표시에서 원고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고 본건 화보에 각 사찰의 표시를 붙이는 행위는 원고의 성명을 타인에게 적용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각 꼬리표시는 사진의 제목에 불과해, 피고의 행위에 권리침해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쟁점 (3)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에 의한 본건 사진 및 본건 화양의 배포 등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각 330만 엔(위자료 300만 엔, 변호사 비용 30만 엔)을 밀돌지 않는다.

나. 피고에 의한 부정경쟁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해 법원은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 원고들은 원고영정을 유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피고가 거듭된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영정을 배포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원고 영장회 및 각 사찰과 관계를 갖는 듯한 언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가 관련된 행위에 의해 원고들이 오랜 세월 사용해 온 본건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출처표시 기능이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로서는 각각 적어도 300만 엔을 밀돌지 않고, 변호사 비용도 30만 엔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원고의 성명권 침해에 대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에 의한 침해의 정도가 집요하고 계속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손해로서는 각각 적어도 300만엔은 밀돌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도 30만 엔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을 다툰다.

(4) 쟁점 (4)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 가. 원고들이 신앙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비공개로 해 온 본존 비불은 피고에 의해 무단으로 공개·반포된 상태에 있으며 피고가 현재도 본건 사진의 무단 사용, 피고 어영의 반포를 계속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본건 사진의 네거티브 필름 등을 이용하는 등 침해할 행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본건 사진의 공개 및 본건 사진이 게재된 상품의 배포 등의 금지나 폐기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본건 어영은 피고가 무단으로 배포 등을 한 것으로, 시코쿠 88곳과는 무관하므로 그 의의나 가치가 없으며 원고 어영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품질이 떨어진 어영을 배포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을 다룬다.

제3 재판소의 판단

1. 전기 전제사실, 원고 영장회 대표자 및 원고 대흥사 대표자의 각 진술 및 진술(갑83, 84), 후술한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초소에서의 본존 취급

각 사찰의 본존은 신앙의 대상이며, 비불로서 일반적으로는 비공개인 것이 많아, 개방하는 기회가 한정되어, 쉽게 관람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다.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의 본존도 비불로 되어 있으며, 원고 대흥사의 본존은 60년에 1회 밖에 개장되지 않는다(갑5).

(2) NHK에 의한 프로그램 방영에 이르는 경위

가. 피고는 1999년경부터 각 사찰의 불상 촬영에 착수하여 촬영한 사진을 2000년 5월에 출판한 ‘▽▽▽▽▽▽▽▽▽▽’이라는 제목의 서적에 수록했다(을4,

을5).

나. 그 후 피고는 2000년 가을 무렵부터 P6(이하 'P6'라 하며, 피고와 함께 '피고들'이라고도 한다.)와 함께 본건 각 사찰의 본존을 촬영하여 사진집을 작성하기 위해 각 사찰소를 돌기 시작했다(갑5, 갑6, 갑37).

다. 2000년 12월경 NHK(마쓰야마 방송국)로부터 원고 영장회에 피고들이 각 명찰을 돌며 본존을 사진 촬영하는 활동에 대해 기록함과 동시에 각 본존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하 '본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협조의뢰가 있었다. 원고 영장회는 같은 달 5일,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NHK와의 사이에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해 협력하고 각 사찰에도 협력을 호소하나,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는 각 사찰에 설명하고 그 양해를 구할 것, 촬영한 사진 및 영상에 대해서는 NHK의 기획 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합의를 했다. 당시 NHK는 각 사찰의 보물 등을 모은 전시회를 하는 것도 기획했는데, 이때의 원고 영장회나 각 사찰의 협력에 대해서는 그 후 협의한 후 검토하기로 했다(갑34 내지 37, 갑78).

라. 2000년 말부터 2001년에 걸쳐 피고들은 각 사찰에서 허가를 얻은 범위 내에서 각 사찰의 본존과 기타 제존을 촬영하였으며, NHK는 이를 기록함과 동시에 제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P6는 2001년 3월경, 건강이 나빠져 촬영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6월에 사망했지만, P6이 촬영할 수 없게 되고 나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사진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다(갑5, 갑6, 갑38, 갑39, 변론의 전체 취지).

마. 이러한 촬영을 바탕으로 NHK는 2001년 6월 1일,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동년 10월 26일에는 '◎◎◎◎◎◎◎◎◎◎'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본건 프로그램2'라 한다)을 방영했다(갑38, 갑39).

(3) NHK 서적의 출판에 이르는 경위

2001년 9월경, NHK는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피고 등이 촬영한 각 사찰의 본존 사진을 사용하여 사진집을 출판하는 것을 기획하고, 원고 영장회에 협

력을 의뢰했다(갑4). 이에 따라 원고 영장회는 NHK의 사진집 출판에 협력하기로 하고, 사진집의 감수나 기사의 집필에 대해 각 사찰에 협력을 의뢰했다. 그리고 원고 영장회와 각 사찰소의 협력 하에 2002년에 NHK 출판에서 NHK 서적이 출판되었다(갑5, 갑6, 갑81, 갑82, 원고 영장회 대표자 본인).

(4) 본건 사진2의 촬영 등

- 가. 원고 극락사에서는 본당 뒤에 설치된 수장고에 본존이 안치되어 있고 본당 감실 안에는 본존 대신에 본존과 같은 아미타여래의 입상을 안치하고 있었다. 원고 극락사는 본존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비불로 취급하여 문화재의 정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조사원 이외에는 제3자에게 본존을 공개하지 않았다(갑85).
- 나. 원고 극락사는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원고 영장회의 요청을 받아 피고에 대해 본존의 촬영을 허가하고, 이것에 근거해 피고는 본건 사진2를 촬영했다. 이 때 본존불은 지진에 의한 전도방지용 금속제 울타리(흰 천으로 감겨 있다)로 보호된 상태였다(갑85).

(5) 본건 사진 67의 촬영 등

- 가. 2001년 3월 당시 원고 대흥사의 주지는 현 원고 대흥사 대표자의 아버지인 P7(이하 'P7')이었다.
- 나. 원고 대흥사에서는 본당 감실 안에 본존 및 그 양 옆에 협시를 안치하고 있으며, 보통 감실의 정면 및 뒷문은 닫혀 있지만 모두 잠기지 않는다. 단, 본존 및 협시 앞에는 다른 불상(전불)이 안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본존의 정면 문을 열 수 없다.
- 다. 원고 대흥사에서는 상기 (1)과 같이 60년에 1회밖에 본존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P7은 친분이 있었던 불교미술가인 P8로부터 1982년, 1986년에 출판한 불상의 사진집 작성에 앞서 원고 대흥사의 본존 촬영 허가를 요청받았을 때도 그 의뢰를 거절했었다.
- 라. 피고는 2001년 3월경 원고 대흥사를 방문하여 P7에게 본존의 촬영 허가를 요청하였다. 당초 P7은 본존 이외의 촬영만을 허가하고 본존의 촬영은 허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본존의 촬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불 사진이

함부로 세상에 나돌아 전통이 손상되어 버리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임을 안 피고는 P7에 대해 허가가 없으면 사진은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필름도 전부 드릴테니까요.’ 등이라고 하며 본존의 촬영 허가를 요청했고, 그 결과 P7은 피고에게 본존의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P7의 입회하에 피고만이 촬영을 개시한 후 약 10분 후, P7은 피고에게 본존의 촬영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몇 번이나 사진을 찍히는 본존을 더 이상 보고 있는 것은 너무 괴롭다고 말하고는 실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이상 갑 39).

그 후, 피고는 본당 뒤편에 있는 감실 뒷문을 열고 본존의 광배를 떼어내고, 연꽃받침대는 그대로인 상태로 연꽃받침대 위에 안치되어 있는 본존만을 180도 회전시켜 본건 사진 67을 촬영했다.

(6) 피고에 의한 사진 및 영정의 공개, 반포 등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본건 어영이나 이것을 사용한 책자, 액자, 족자, 벽보의 배포 등을 실시하고(갑10, 갑11, 갑21), 본건 사진을 자기가 개최하는 사진전이나 미술관 등에서 공개 등을 했다(갑15).

또, 피고는 2008년 5월경 피고서적을 출판하고, 2010년 10월경에는 본건 사진을 사용한 ‘▲▲▲▲▲▲▲▲▲▲’이라는 서적(갑22)을, 2013년 12월경에는 본건 사진을 사용한 ‘■ ■ ■ ■ ■ ■ ■ ■ ■ ■’이라는 제목의 서적(갑32, 갑79)을 출판하고, 2012년경부터는 본건 사진을 이용한 캘린더(갑23 내지 25)나 본건 사진이 영상으로 흐르는 DVD(갑26)를 제작·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영장회에 의한 모래밭기 본존의 발행이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영장회 및 그 당시의 대표자였던 P9를 상대로 1억7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도쿄지방법판소에 제기하였으나, 2008년 4월 25일,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는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24일,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갑9, 갑13, 변론의 전부지).

다. 그 후 원고 영장회나 각 재판소는 원고 대리인을 통해 피고나 전시회 주최자 및 출판사를 상대로 본건 사진을 이용한 전시회 개최 및 서적 출판을 중지하고, 본건 서적이거나 본건 사진에 관한 네거티브 등을 폐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갑27 내지 31, 변론의 전체 취지).

2. 쟁점 (1) 가 (본건 사진의 촬영·사용에 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1) (가) (본건 합의의 유무 및 그 내용)에 대하여

각 사찰의 불상이나 본존은 예배의 중심이며, 각 사찰에서 소중히 지키고 있는 것이며(원고 영장회 대표자 본인·6페이지), 각 사찰 중에는 본존을 비블로서 비공개로 하는 곳이 많으며, 또한 그 공개를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전기 인정사실(1)).

그렇다면, 그러한 취급을 배려하지 않고, 원고영장회가 본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력을 결정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본존의 촬영이나 게재의 허가를 얻을 수 없었던 찰소도 있었다는 점(갑5, 갑6)도 함께 고려하면, 원고 영장회와 NHK 간에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협력함에 있어서 촬영된 본존의 사진·동영상은 본건 프로그램 및 NHK 서적에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본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

(2) (나) (본건 합의의 피고에 대한 구속력)에 대하여

한편, 피고들은 각 사찰의 본존의 촬영을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 이전부터 독립적으로 행한 자이며(전기 인정사실(2) 나), NHK의 종업원 등이 아니라 그 촬영 활동이 본건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전기 전제사실(2) 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만일 본건 합의를 전제로 원고 영장회가 각 지청에 협력을 의뢰함으로써 피고들이 종전보다 원활하게 촬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로부터 즉시 원고 영장회와 NHK 간 본건 합의의 구속력이 당연히 피고의 촬영 활동에도 미친다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피고들이 본건 합의에 복종한다는 취지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본건 합의가 피고를 구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해 본건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쟁점 (1) 가(본건 사진의 촬영·사용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1) 원고 영장회는 시코쿠(四国) 88곳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에 불과하며, 본건 사진의 피사체인 각 불상의 권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전기 전제사실(1) 나) 본건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법행위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사찰도 자기 절의 본존 이외의 불상의 권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법행위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익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본건 사진2에 관한 촬영·이용 동의

가. 본 건 사진2는 원고 극락사의 본존을 촬영한 것이다.

나. 분명 원고 극락사는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원고 영지회가 NHK에 협력하도록 요청하여 피고에 대해 본존의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전기 인정사실(4) 나).

그러나 극락사의 본존은 비불인 데다가 본건 프로그램 제작 직후에 출판된 NHK서적에서도 본건 사진2의 게재 허가는 나오지 않고 대신 본존 불상얼굴이 게재되어 있는 것이나(전기 전제사실(3) 다), 본건 사진2의 본존은 지진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흰색천이 감긴 상태로 촬영되어 있으며(전기 인정사실(4) 나), 불상의 사진촬영 조건으로는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사진 2에 대해 사진집에 게재하는 등 피고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촬영이 허가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극락사가 피고에게 본존의 촬영을 허가한 것은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한정된 것으로 이를 넘어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본건 사진에 관한 촬영·이용 동의

가. 원고 대흥사는 본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원고 영지회의 요청을 받아 일단 피고에게 본존의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전기 인정 사실(5) 라).

이 점에 대해 원고 대흥사는 앞에 있는 불상뿐이라는 취지를 주장하나, 본건 프로그램2의 내용(갑39)에 비추어 채택할 수 없다.

나. P7은 피고가 촬영을 개시한 후 약 10분 후에 본존의 촬영 허가를 철회하고 그 자리를 떠났으며, 본건 사진 67은 광배가 제거되고 연꽃받침대가 정면을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전기 인정 사실(5) 라)에서 볼 때 본건 사진 67은 P7이 촬영에 입회한 사이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 P7이 본존의 촬영 허가를 철회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뒤에 원고 대흥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된 것이라고 추인된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엄중하게 보존되어 있는 비불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흥사의 본존이 안치되어 있는 감실 문에는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아(갑84), 이것을 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으며, P7이 기분을 상하게 하여 불상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는 피고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P7의 협력 없이 본존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점을 본다면 상기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또, 피고는 P7이 본존 앞에 걸려 있던 그물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뒤에서 찍어 달라고 말하고 스스로 본존을 연꽃받침대 위에서 돌려 그것을 피고가 촬영했다고 주장하는데, 신앙의 대상인 본존을 연꽃받침대와 반대 방향으로 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본존을 모독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으며(원고 대흥사 본인·10페이지), 종전에 본존을 소중히 다루고 전통을 존중하는 P7의 자세(갑 39, 갑84) 등에 비추어 볼 때 P7이 스스로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상기 피고의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4) 종교적 인격권 침해 여부

전기 (2) (3)에서와 같이 본건 사진 2는 널리 배포되는 것까지를 상정하여 촬영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또한 본건 사진 67은 원고 대흥사에서 무단으로 촬영된 것으로, 모두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나 널리 일반에 유포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들 사찰은 모두 본존을 비불(秘仏)로 하고 있고, 원고 극락사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하는 조사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대흥사에 대해서도 60년에 1회 공개할 뿐이며(전기 전제사실(4) 가. 동(5) 다). 이러한 원고들 사찰에서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본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사찰의 의도와는 달리 피고가 본건 사진2 및 본건 사진67을 사용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널리 일반에 유포하는 것은 원고들 사찰의 종교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쟁점 (2) 가(본건 불상사진의 배포 등이나 본건 사진의 공개 등에 관한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책임 등)에 대하여

(1) 확실히 ‘시코쿠 제2번’ ‘극락사’라는 표시는 원고 극락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갑67, 변론의 전체 취지).

(2) 그러나 어떤 상품에 특정 사찰명이 부기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항상 해당 상품의 출처가 해당 사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건 어영에 첨부된 피고 표시는 그 내용이나 형태에서 각 사찰표시와 유사하나(갑86, 변론의 전체 취지), 본건 어영은 본존 어영이나 원고 어영과 달리 본존 사진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진 상부에 각 사찰의 번호가, 하부에 각 사찰의 사원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본건 어영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 표시는 해당 본존의 사진이 어느 어영인지를 명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애초에 본존어영이나 원고어영은 각 사찰이 참배, 납경의 증거로서 각 사찰의 본존을 그린 지표를 배포하는 것으로 본래 각 사찰 이외의 장소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널리 알려진 데다(전기 전제사실(2)가. 변론의 전체 취지), 피고는 본건 어영을 ‘지폐 타입’의 ‘본존 사진’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는 본 사찰표시가 있는 것 중 88장의 본건 어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병풍이나 족자 등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 것(갑 21의 1 및 2)을 고려한다면, 본건 어영을 접한 사람은 본건 어영의 피고표시를 오로지 본건 어영의 사진의 피사체인 불상이 어느 사찰의 본존인가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이해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 표시를 원고들의 상품 등 표시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본건 화보에 붙인 피고 표시에 의해 원고들의 영업과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표시를 붙인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5. 쟁점 (2) 나(본건 어영 반포 등에 따른 원고들의 성명권 침해 유무)에 대해

원고들은 본건 화보에 각 꼬리표시를 붙이는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을 타인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권리(성명권, 명칭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 표시는 오로지 본건 어영 사진의 피사체인 불상이 어느 사찰의 본존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대략 원고들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성명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

6. 쟁점 (3) (원고들의 손해) 및 (4) (배포 등의 금지, 폐기 청구, 사죄광고의 당부)에 대해서

(1) 원고들의 손해

가. 위자료

원고들 사원에서 각 본존불의 종교적 가치와 더불어 사진의 촬영 경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중지 요청을 받으면서 본건 사진 2 및 본건 사진집을 이용한 사진집의 출판이나 미술관에서의 전시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전기 인정사실(6)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사원의 종교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100만 엔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변호사 비용

본건과 관련된 소송의 어려움,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으로 각 10만 엔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금지청구 등

피고가 본건 사진2 및 본건 사진이나 이것을 이용한 상품을 계속 발행하는 한, 원고들의 사원의 상기 종교적 인격권은 계속 침해당하게 되는바, 상기 인정에 관한 종교적 인격권의 침해에 이른 모습 등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사원의 종교적 인격권 회복을 도모하고 침해의 예방을 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상기 각 사진의 이용 금지나 폐기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극락사에 대해서는 본건 사진 2에 대해, 원고 대흥사에서는 본건 사진에 대해, 피고에게 각각 상기 각 사진의 공개 및 상기 각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 서적 상품의 배포 등의 금지 및 상기 각 사진, 그 네거티브 필름 및 전자 데이터, 상기 각 사진을 사용한 불상서적 상품의 각 폐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사죄광고

상기 5와 같이 원고들의 성명권 침해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밖에 본건 영정의 공개, 배포 등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또한 상기 4와 같이 원고들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죄광고의 게재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7. 결론

이상에 따라, 원고 영장회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원고 극락사 및 원고 대흥사의 청구는 피고에게 (1) 각 110만엔 및 이에 대해 2014년 11월 23일부터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불, (2) 원고 극락사에 대해서는 본건 사진 2에 대해, 원고 대흥사에 대해서는 본건 사진 67에 대해, 각각 사진의 전시·공개,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서적·상품의 제작·판매·반포의 금지 및 본건 사진, 그 필름 및 전자데이터, 사진을 사용한 불상사진·서적·상품의 각 폐기를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으므로 가집행선고에 대해서는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쿠시마 지방재판소 제2민사부

재판장 재판관 川畑公美

재판관 村瀬洋朗

재판관 大西康平